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he Fire Safety Management

- Focused on Fire-fighting Officers and Fire Safety Managers in Chonnam Province -

Sung Woon Hong^{1#}, Jung Min Park²⁺, Jin Gyu Choi³

¹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²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si, jeonnam, Korea

³ Naju Fire Station, 4201 Yehyang-ro, Naju-si, jeonnam,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ssues pertaining to fire-fighting performance, using the responses from fire-fighting officers and fire safety manager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improv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fire safety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nationally qualified technicians as fire safety managers who can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asks in fire safety management in a way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Second, pract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argeting fire safety managers so that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full-time fire safety managers at the sites. Fourth, programs enabling trainees to gain skills and field experienc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Key words: fire-fighting safety management system, instrumental environment, fire safety manager

1. 서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¹⁾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로 자리매김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되풀이되어선 안 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흐름과 더불어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The 1st author: Sung Woon Hong, Tel. +82-62-530-0870, e-mail. atti93@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Jung Min Park, Tel. +82-61-330-3562, e-mail. jmpark21@hanmail.net

1) 1993년 서해 웨리호 침몰(292명 사망), 1994년 성수대교 붕괴(32명 사망, 17명 부상),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502명 사망, 937명 부상, 6명 실종),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21명 실종, 151명 부상), 2014년 세월호 참사(4월 18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2014년 5월 26일, 6명 사망 42명 부상),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8명 부상) 등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이며, 만약 안전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추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소방대상물에서의 화재 발생 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적절한 초기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 소방안전 실습 교육 및 화재 발생 시 상황 전파, 소화, 대피유도, 자위소방대의 화재진압 등의 자체 소방훈련을 생활화하며, 유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출동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압 및 대응조치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이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 초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소방안전관리제도이다. 그러나 전술한 대형 안전사고에서 보듯이 소방안전관리제도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소방안전관리제도가 그 목적인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그 동안의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task environment)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자격에 걸맞은 화재예방 및 대응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이다(Lee & Bae, 2013).

요컨대 소방안전관리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을,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현장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안전관리자와 이들을 관리, 감독, 점검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

간 인식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환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활동과 조치들은 소방안전관리자 역량만으로 완수되기 어렵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제도적 환경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실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에서 인식조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과 대응활동을 통해 유사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이 중요한데, 만약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부터 연원할 것이라고 추론하기 때문이다. 이에 생활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과 이들을 관리, 감독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간 인식의 차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효시는 1952년 2월 9일 직장 방공단 규칙을 제정, 직장 방공단 방호부대 내 소방반을 두도록 하여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며,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4개 법률로 분리 발전하게 되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명칭도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방화책임자’, 1970년 「소방법」 개정시 ‘방화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었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변천²⁾에서 보듯이 소방안전관리제도는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 자격 또는 소방관련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령」에 의거하여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이러한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통한 관(官) 중심의 소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예방적인 소방안전관리, 화재 발생 이후 진압적인 소방안전관리로 피해 경감의 효과, 그리고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건물과 재산,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대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관(官) 중심의 소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에 대한 자체적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인 소방안전관리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진압적인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피해 경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분야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강제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활동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제도는 화재에 관한 자기책임성을 바탕으로, 일정규모 이상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법적인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대응 활동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Lee, 2011; Lee & Bae, 2013).

2.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위와 역할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³⁾ 및 「시행령」⁴⁾, 「시행규칙」⁵⁾,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⁶⁾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2) 1958. 03. 11. 소방법 제8조의 “학교, 공장, 백화점, 위험물제조소 또는 처리장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방화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방화책임자’에 의한 소방계획 및 훈련의무를 도입하였고, 1967. 04. 14.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의무(7일 이내) 및 업무 규정, 1972. 07. 28. 「소방법 시행령」에 특수장소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1급,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차등화하고,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보다 강화된 유자격자 선정, 2004. 05. 30.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2012. 02. 05.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특급·1급·2급의 3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달리 규정하여 수행토록 하였다(Kook, 2006).

3) 법률 제13439호, 시행일 2016.01.25.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제50조(별직) / 제53조(과태료)

4) 대통령령 제26916호, 시행일 2016.01.21.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총리령 제1176호, 시행일 2015.07.16.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대해서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방안전분야의 자격⁷⁾을 갖춘 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물⁸⁾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로 자율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자위소방대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을 정상화하여 화재진압활동과 즉각적인 인명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는 평상시 반복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소방 관련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사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⁹⁾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③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이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와 운영 실태와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로 Shin(2015)는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공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규정은 소방안전관리를 행정보조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며, 현

법의 안전권을 근거로 화재예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부실점검이라는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점검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규정의 개정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 대상물의 수를 제한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hin, 2015). Joo(2008)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안전관리제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각 제도들의 행정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각 제도들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하여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방안전관리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로 Han & Jeong(2013)은 소방안전관리자 직무와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실무자는 타 업무와의 겹침으로 인해 업무상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는 소방안전관리의 전문성 함양 및 고취를 통해 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인력으로는 복수인력의 투입, 즉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을 통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실기·실습 등이 반영된 교육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밖에 처우개선 및 관계자 관심 등이 고취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Han & Jeong, 2013).

Lee & Bae(2013)의 연구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소방안전관리

6)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7)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1급 : 5일간 40시간(1일 8시간), 2급 : 4일간 32시간(1일 8시간) 이수)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8) 소방안전관리대상은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2015년 1월 1일 현재 521개소)은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2015년 1월 1일 현재 9,866개소)은 연면적 15,000㎡이상인,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2015년 1월 1일 현재 261,902개소)은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1천톤 미장 저장·취급하는 시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등이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6항

자의 지위 등 처우에 대한 문제, 취약한 실무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검직 금지와 급여를 현실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과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통하여 소방안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충분한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실습시설·장비의 보완 및 교육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Lee & Bae, 2013).

Yoon(2013)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소방행정기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 자율 소방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다른 업무 겸직 제도의 개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강화,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전술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제도가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따르고자 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으로 양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이들을 관리, 감독, 교육하는 소방공무원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도적 환경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 분석틀

소방안전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업무 요인과 역량 요인으로 양분할 수 있다. 먼저 업무 요인은 채용제도와 근무환경,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내 거주자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채용제도 및 근무환경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상근 및 검직 허용여부, 보수체계(보수지급 방식 및 보수액),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소방대상물(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방안전관리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거나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하기도 한다.

둘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관계인에 대한 문제점 시정조치 요구권 및 제재방안 여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관련 시정조치 이행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특정소방대상물 내 거주자와의 관계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거주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유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기능을 가질 경우,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요인에는 교육 프로그램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의 관계(자격시험의 적절성), 교육기관의 전문성,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포함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이후 초동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시험의 적절성은 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자격별로 차별화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자격증을 남발할 경우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우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양성은 교육기관 강사의 전문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임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이론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적 강사의 수급체계가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라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반복적인 실기실습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소방장비 신제품 및 신기술 이해, 소화장비 및 설비 작동의 숙련도 향상, 개정 법규의 인식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으로 수렴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의 <Figure 1>과 같다.

III. 실증분석

1. 조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인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제도적 환경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인식 3개 문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 11개 문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10개 문항,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1개 문항, 그리고 일반사항 4개 문항 등 총 29개 문항이며, 대상별로 일반사항을 제외한 공통항목 17개 문항, 소방안전관리자만 응답하는 항목 6개 문항, 소방공무원만 응답하는 항목 2개 등이다. 설문의 척도는 명목척도와 등간척도를 활용하였고,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문항별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 주관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지역의 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전남 지역 소방공무원이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6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소방공무원은 전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3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23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집합조사와 우편조사를 이용하였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자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다음에 우편 또는 직접 수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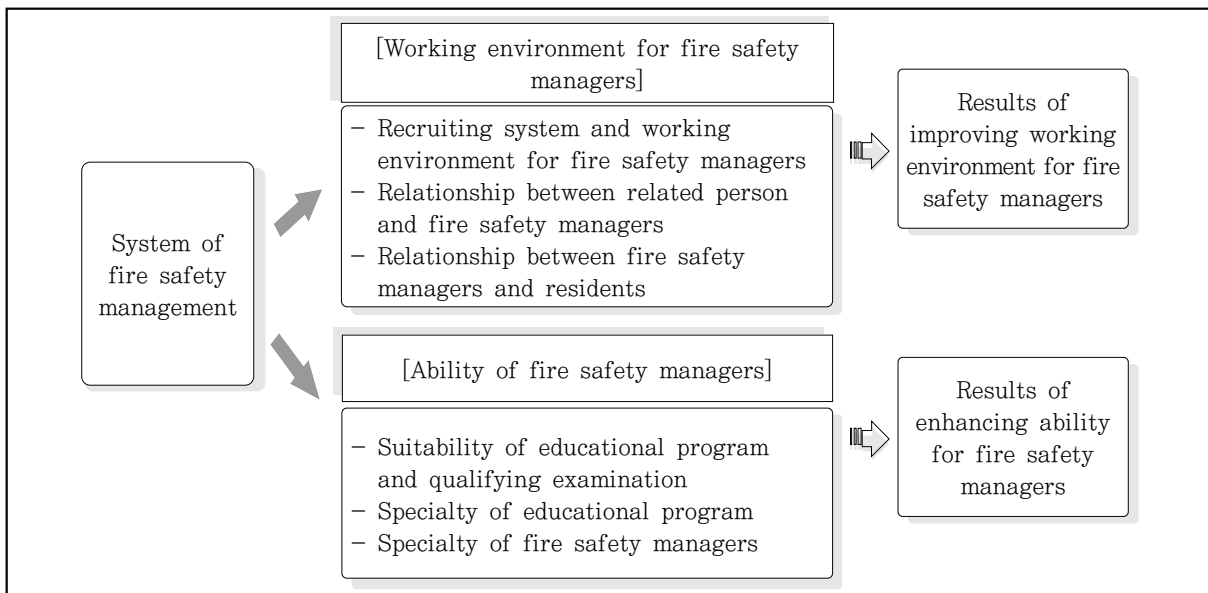


Figure 1. Analysis framework

Table 1. Constitution of questionnaire

Categories	contents of question	targeting	measure
Perception for fire safety management (3)	Perception of the need for fire safety managers(1)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measure
	Perception for fire safety management(1)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measure
	Perception for autonomous fire protection(1)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measure
Working environment for fire safety managers (11)	Recruiting and affair assignment of fire safety managers(5) - working satisfaction, affair assignment, working methods, benefit - pay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fire safety managers,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nominal interval measure
	Relationship between related person of fire objects and fire safety managers(2) - reflect opinion for revising - observance of appointment system for fire safety managers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measure
	Relationship between user of fire objects and fire safety managers(2) - responsibility for accident in fire safety management - need of designated agent for safety management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nominal measure interval measure
	obstructive factors and improvement for fire safety managers on duty(2) - obstructive factors of fire safety management on duty - improve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on duty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nominal measure nominal measure
Ability of fire safety managers (10)	ways of acquiring certificates and knowledge in fire safety management(2)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nominal measure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fire safety managers(2) - Improvement of Educational methods - lim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	nominal measure nominal measure
	Specialty for fire safety managers(6) - job performance, extinguishment, security, evacuation, extinguish active, specialty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interval measure
Improvement ways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1)	Improvement ways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1)	public official.	nominal measure
General details (4)	- gender, age(2)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 qualification for fire safety managers(1)	fire safety managers, public official.	
	- current position(1)	public official.	

였다. 수거된 설문지 400부 중에서 불성실하고 누락하여 기입한 설문지 97부를 제외한 303부를 분석 대상(소방안전관리자 142부, 소방공무원 161부)으로 하였으며, 최대 표본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30%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Excel에 부호화된 숫자를 코딩한 후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황분석을 위한 빈도분석과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χ^2 (카이제곱)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총 유효 응답자 303명 중에 '남자'가 277명(91.4%), '여자'가 26명(8.6%)이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03명(34.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0대'가 98명(32.3%), '30대'가 70명(23.1%), '60대 이상'이 30명(9.9%), '20대'가 2명(0.7%) 순이었다. 소방안전관리자 142명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각각 48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46명(32.4%) 순이었다. 소방공무원 161명의 직위는 '소방교'가 41명(13.5%)로 가장 많았고, '소방위'가 36명(11.9%), '소방장'이 33명(10.9%), '소방사'가 25명(8.3%), '소방경'이 24명(7.9%), '소방령 이상'이 2명(0.7%) 순이었다.

2. 조사 결과

1) 소방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인식

(1)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성 인식

‘화재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다음의 <Table 2>과 같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75.6%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11.9%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유효 응답자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89.4%로 소방안전관리자의 59.9% 보다 높게 응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필요성을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관리자간의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p <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소방안전관리 담당자보다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점검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공감수준이 더 높은 것은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소방안전관리제도가 실효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을 묻기 위해 유효 응답자 303명에게 ‘화재 시 비상 매뉴얼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매우 필요하다’와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86.5%로 높게 나타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가 5.6%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3) 자율방화 인식

자율방화에 관한 인식을 묻기 위해 유효 응답자 303명에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관심 정도’에 대해 다음의 <Table 4>와 같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32명 (4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36.6%,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19.8%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5.9%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응답간의 유의미한 차이($p < 0.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소방안전관리자

Table 2. Need for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5	3.5	1	0.6	6	2.0
disagree	22	15.5	8	5.0	30	9.9
neutral	30	21.1	8	5.0	38	12.5
gree	52	36.6	27	16.8	79	26.1
strongly agree	33	23.2	117	72.7	150	49.5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4.112, fire safety managers : 3.606, fire-fighting officer: 4.559, χ^2 : 75.996, df : 4, p : 0.000**

Table 3. Need for emergency manual in case of fire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2	1.4	2	1.2	4	1.3
disagree	8	5.6	5	3.1	13	4.3
neutral	14	9.9	10	6.2	24	7.9
agree	41	28.9	70	43.5	111	36.6
strongly agree	77	54.2	74	46.0	151	49.8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4.294, fire safety managers : 4.289, fire-fighting officer : 4.298, χ^2 : 7.835, df : 4, p : 0.098

Table 4. Perception of autonomous fire prevention for related person on fire objects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5	3.5	10	6.2	15	5.0
disagree	16	11.3	80	49.7	96	31.7
neutral	66	46.5	66	41.0	132	43.6
agree	36	25.4	2	1.2	38	12.5
strongly agree	19	13.4	3	1.9	22	7.3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2.855, fire safety managers : 3.338, fire-fighting officer : 2.429, χ^2 : 85.536, df : 4, p : 0.000**

는 자율방화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유보한 반면, 소방공무원들은 자율방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정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환경

(1) 소방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업무 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를 묻는 설문 에 대해 <Table 5>와 같이 '보통이다'가 40.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9.4%,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0.4%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만족도는 5점 환산평균 3.155점(표준편차 1.054)으로 높지 않고, 업무 만족도에 대한 응답자들간의 편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Work satisfaction of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N)	P(%)
strongly disagree	15	10.6
disagree	14	9.9
neutral	57	40.1
agree	46	32.4
strongly agree	10	7.0
total	142	100.0

Table 7. Working methods for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N)	P(%)
resident work (24 hours)	37	26.1
day shift	82	57.7
day/ night shift	6	4.2
agency business to fire safety management	17	12.0
total	142	100.0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분장'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6>과 같이 '기타 업무와 겸직하여 수행한다'가 62명(58.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만 전담한다'는 응답이 39명(27.5%),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와 병행 전담한다'가 20명(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이를 위임, 위탁한 관계자가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근무 방식'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7>과 같이 '주간 근무'라는 응답이 82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주 근무(24시간)'가 37명(26.1%), '주/야간 근무'가 6명(4.2%),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17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방대상물의 위험요소가 24시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격자들의 근무 공백은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흠결로 표출됨을 알 수 있다.

Table 6. Affair assignment of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N)	P(%)
exclusive management for fire safety management	39	27.5
combining safety management task on hazards	20	14.1
performance with extra tasks	83	58.5
total	142	100.0

Table 8. Benefit for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N)	P(%)
within 30,000 won	4	2.8
over 30,000 won to within 50,000 won	61	43.0
over 50,000 won to within 70,000 won	7	4.9
over 70,000 won to within 100,000 won	1	0.7
No benefit	69	48.6
total	142	100.0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대한 수당’을 묻는 설문
에 대해 상기의 <Table 8>과 같이 ‘없음’이 69명(48.6%)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만원 초과~5만
원 이내’가 61명(43.0%), ‘5만원 초과~7만원 이내’가
7명(4.9%), ‘3만원 이내’가 4명(2.8%), ‘7만원 초과~10
만원 이내’가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방
안전관리자의 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소
방대상물과의 관계에서 대표자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
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자들의 수당이 대
부분 5만원 이내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 받고 있
는가’에 대해 다음의 <Table 9>와 같이 유효 응답자 303
명 중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20명(7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52명(17.2%),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31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소방공무원은 5
점 환산평균 1.683점으로 소방안전관리자 2.275점에 비
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대상 간에 유의미한 차이
($p < 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보건
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 규정과 이에 대
한 미준수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소방안전관리가 지켜지지 않을 시
에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건
축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 시정을
요구할 때 반영되는가’에 대해 다음의 <Table 10>과 같
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에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유보
가 44.9%로 가장 많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4.2%,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
다’는 응답이 23.6%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제도 준수하는
가’에 대해 다음의 <Table 11>과 같이 ‘전혀 그렇지 않
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85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21.1%,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가 1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건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는 소방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
며,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간의 인식 차이

Table 9. Payments for fire safety managers

item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63	44.4	71	44.1	134	44.2
disagree	15	10.6	71	44.1	86	28.4
neutral	34	23.9	18	11.2	52	17.2
agree	22	15.5	1	0.6	23	7.6
strongly agree	8	5.6	0	0.0	8	2.6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1,960, fire safety managers : 2,275, fire -fighting officer : 1,683, χ^2 : 68.116, df : 4, p : 0.000**

Table 10. Reflection of opinion on limitation in fire safety management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9	6.3	2	1.2	11	3.6
disagree	13	9.2	37	23.0	50	16.5
neutral	52	36.6	84	52.2	136	44.9
agree	48	33.8	37	23.0	85	28.1
strongly agree	20	14.1	1	0.6	21	6.9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3,182, fire safety managers : 3,401, fire-fighting officer : 2,988, χ^2 : 41.088, df : 4, p : 0.000**

Table 11. Need of designated agent in the absence of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28	19.7	42	26.1	70	23.1
disagree	22	15.5	93	57.8	115	38.0
neutral	47	33.1	17	10.6	64	21.1
agree	40	28.2	8	5.0	48	15.8
strongly agree	5	3.5	1	0.6	6	2.0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2.356, fire safety managers : 2.803, fire-fighting officer : 1.963, χ^2 : 83.8,6, df : 4, p : 0.000**

도 유의미($p < 0.001$)하게 나타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시 불응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만 하다. 시정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소방안전사고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3) 소방대상물의 이용자(사용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

‘화재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다음의 <Table 12>과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에 ‘건물관계인(소유자, 사용자, 점유자)’이 144명(47.5%)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등)’가 79명(26.1%),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가 67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 모두 ‘건물관

계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물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 설정이 불명확하며, 소방안전관리제도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건물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리자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과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과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관리업무의 대리 지정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13>과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대체로 필요하다’와 ‘절대로 필요하다’가 66.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보통이다’가 19.1%, ‘전혀 필요하지 않다’와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가 14.9% 순으로 나

Table 12. Responsibility in case of fire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building (owner, user, occupant) manager (fire safety managers, etc)	46	32.4	98	60.9	144	47.5
fighting/evacuation facilities imperfection	41	28.9	38	23.6	79	26.1
general user for using the facilities	5	3.5	8	5.0	13	4.3
total	50	35.2	17	10.6	67	22.1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χ^2 : 34.783, df: 3, p : 0.000**

Table 13. Need of designated agent for safety management tasks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5	3.5	0	0.0	5	1.7
disagree	28	19.7	12	7.5	40	13.2
neutral	41	28.9	17	10.6	58	19.1
agree	51	35.9	68	42.2	119	39.3
strongly agree	17	12.0	64	39.8	81	26.7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3.762, fire safety managers: 3.331, fire-fighting officer : 4.143, χ^2 : 50.037, df : 4, p : 0.000**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건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방안전관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이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필요성에 대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소방안전관리자들은 업무 관계상 대리인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시 장애요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장애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14>와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 9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상물 소유자(대표자)의 무관심’이 81명(26.7%), ‘대상물의 이용자 비협조’가 71명(23.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 ‘대상물 이용자의 비협조’ > ‘대상물 소유자(대표자)의 무관심’ > ‘과중한 업무와 책임’ 순으로 응답하였고, 소방공무원은 ‘대상물 소유자(대표자)의 무관심’ > ‘대상물 이용자의 비협조’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 ‘과중한 업무와 책임’ 순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관리자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대상물 소유자의 무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홍보와 계몽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15>와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소방안전관리 능력의 함양’이 98명(32.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이 95명(31.4%), ‘소방시설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70명(23.1%), ‘소방법 개정 등 정비’가 25명(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이 39.8%로 소방안전관리자와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p < 0.05$)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계인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지식의 취득 경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경로’를 묻는 설문에

Table 14. Obstructive factors of fire safety management on duty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excessive tasks and responsibility	20	14.1	27	16.8	47	15.5
Lack of knowledge on fire safety management	64	45.1	34	21.1	98	32.3
noncooperativity of user on objects	29	20.4	42	26.1	71	23.4
indifference of owner on objects	23	16.2	58	36.0	81	26.7
etc	6	4.2	0	0.0	6	2.0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chi^2 : 32.667, df: 4, p : 0.000^{**}$

Table 15. Lmprovement ways of performing fire safety management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treatment improvement of fire safety managers	31	21.8	64	39.8	95	31.4
Fire Services Act reform	8	5.6	17	10.6	25	8.3
enhance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ability	59	41.5	39	24.2	98	32.3
securement of fire facility maintenance	35	24.6	35	21.7	70	23.1
etc	9	6.3	6	3.7	15	5.0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chi^2 : 18.265, df: 4, p : 0.001^*$

대하여 다음의 <Table 16>과 같이 유효 응답자 142명 중 '한국소방안전협회(강습교육)'를 통해서 취득한 응답자가 122명(85.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응답자가 10명(7.0%), '소방관련 학과(학력 인정)'가 4명(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소방안전관리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습득 경로'를 묻는 설문에 대해 <Table 17>과 같이 유효 응답자 142명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의 교육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120명(8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계적 교육기회 등을 거의 접해보지 못했음'이 11명(7.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 업무 등 현장 경험을 통해서'가 6명(4.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소방대상물 이용자의 안전과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실습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자율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의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18>과 같이 유효 응답자 161명 중 '실습시간이 너무나 적다'가 57명(35.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실습장소 및 실습장비 수준이 열악하다'가 51명(31.7%), '자격별로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가 20명(12.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을 개선한다면 어떻게 해

Table 16. Methods of acquiring certificates on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N)	P(%)
Korea fire safety association	122	85.9
national technique qualification	11	7.7
department related fire fighting	4	2.8
career recognition related fire-fighting office	1	0.7
designated agent	4	2.8
total	142	100.0

Table 17. Methods of acquiring knowledge on fire safety management

contents	F(N)	P(%)
School curriculum	5	3.5
field experience	6	4.2
education in Fire Safety Association	120	84.5
no experience	11	7.7
total	142	100.0

Table 18. Lim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 on fire safety management

contents	F(N)	P(%)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between program contents and tasks of fire safety managers.	7	4.3
There is no difference regarding the levels of qualification	20	12.4
There is little practice hours.	57	35.4
There is poor practical place and equipment.	51	31.7
There are many students compared with number of professors	17	10.6
etc	9	5.6
total	161	100.0

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다음의 <Table 19>과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217명(71.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통한 교육'이 46명(15.2%), '강의실에서 이론 교육'이 19명(6.3%),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가 10명(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교육'에 대해 소방공무원은 88.2%인데 반해, 소방안전관리자들은 52.8%라고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한 교육'도 선호한다는 응답이 27.5%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교육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의 다각화 등 다양한 콘텐츠

(UCC, 플래시 동영상, 플래시 게임 등)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소방공무원들은 분기별, 상·하반기 정기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3)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20>과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152명(50.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90명(29.7%),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61명(20.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9. Improvement plans of educational methods on fire safety management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theory lecture in class	18	12.7	1	0.6	19	6.3
online lecture	39	27.5	7	4.3	46	15.2
participate in field education	75	52.8	142	88.2	217	71.6
no education	9	6.3	1	0.6	10	3.3
etc	1	0.7	10	6.2	11	3.6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chi^2 : 71.009, df : 4, p : 0.000^{**}$

Table 20. Job performance of fire safety managers

content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F(N)	P(%)	F(N)	P(%)	F(N)	P(%)
strongly disagree	9	6.3	36	22.4	45	14.9
disagree	17	12.0	90	55.9	107	35.3
neutral	65	45.8	25	15.5	90	29.7
agree	41	28.9	3	1.9	44	14.5
strongly agree	10	7.0	7	4.3	17	5.6
total	142	100.0	161	100.0	303	100.0

Total mean : 2.607, fire safety managers: 3.183, fire- fighting officer : 2.099, $\chi^2 : 116.395, df : 4, p : 0.000^{**}$

Table 21. Specialty for fire facility of fire safety managers

items	fire safety managers		fire -fighting officer		total		note
	M	SD	M	SD	M	SD	
extinguishment facilities	3.812	0.931	3.062	0.899	3.414	0.987	$\chi^2 : 98.104, p : 0.000^{**}$
alarm facilities	3.453	1.046	2.894	0.841	3.156	0.982	$\chi^2 : 89.642, p : 0.000^{**}$
evacuation facilities	3.749	0.963	2.870	0.838	3.282	0.999	$\chi^2 : 122.241, p : 0.000^{**}$
extinguish active facilities	3.265	1.261	2.547	0.894	2.883	1.138	$\chi^2 : 78.594, p : 0.000^{**}$
specialty	3.570	0.932	2.845	0.766	3.185	0.921	$\chi^2 : 149.30, df : 41, p : 0.000^{**}$

특히 소방공무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78.3%로 소방안전관리자 18.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업무 능력(전문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건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능력(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이를테면 처우 개선과 정기적인 실습 교육 그리고 모의훈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설비의 전문성’을 묻는 구체적인 항목인 소화, 경비, 피난, 소화활동 등을 살펴보면 상기의 <Table 21>과 같이 유효 응답자 303명 중 ‘소화설비’가 5점 환산평균 3.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난설비’가 3.282점, ‘경보설비’가 3.156점, ‘소화활동설비’가 2.883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소방공무원들은 소화설비(3.062점) > 경보설비(2.894점) > 피난설비(2.870점) > 소화활동설비(2.547점) 순으로 응답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인식간의 유의미한 차이($p < 0.001$)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전반적으로 소방 시설·설비에 대한 작동과 유지에 대해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작동시 이를 보완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관계자들은 소방시설·설비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대상물의 이용자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이 소방안전관리에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4)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해 다음의 <Table 22>와 같이 유효 응답자 161명 중 ‘소방대상물의 거주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가 65명(40.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

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전가’가 44명(27.3%),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결여’가 31명(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본래 목적인 자율관리를 통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법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되며, 지켜지지 않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분석결과 및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전남의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소유자나 대표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인이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 고용 비용 절감과 안전시설 보완 비용 투자에 인색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 기술자격자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경로에 대해 ‘한국소방안전협회(강습교육)’를 통한 취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의 습득 경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방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의 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많이 응답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득에 관해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강습교육이

Table 22. Limitation of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contents	F(N)	P(%)
Lack for clarity and specification of provision regarding fire safety managers system	31	19.3
shift responsibility of fire safety management to tenant	44	27.3
Lak of knowledge on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7	4.3
There is no measures on passive attitudes of residents in fire objects	65	40.4
etc	14	8.7
total	161	100.0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론 및 실기·실습을 병행한 실용교육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협회의 전용 교육장 이외에 지역별 소방시설 실기 실습장이 있는 소방관련 학과의 대학교나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서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실습을 병행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상주근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방식은 소방대상물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주간근무, 야간근무, 주야간 상주근무 등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유도 등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해서라도 근무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상주근무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인원수를 증원시켜야 한다.

넷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자로서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낮아 소방안전관리 업무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몇 시간의 이수교육이 아닌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유사시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참여하는 현장실습(체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이나 강습교육이 이론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소방대상물 자체 점검이나 교육훈련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습을 통해 소방시설 작동점검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 소방학교나 소방학과 학생이 있는 대학교

에서 위탁 실습교육을 연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의 점진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험물제조소 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부재 시 반드시 위험물안전관리 직무대리자를 지정·운영토록 하여 유사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소방안전관리자가 행하여야 할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자위소방대의 조직 편성과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소방·방화 관련시설의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밖에 안전관리 상 필요한 업무를 계획·수립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해 제도적 환경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실증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화재 등 재난사고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적 위험요소의 증가와 더불어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현대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대응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행 소방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환경과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정소방대상물별로 대형화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대형화 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소방안전관리대상의 특급, 1급, 2급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2급 안전관리대상을 용도, 특성, 화재위험 난이도 등을 구분, 세분화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체계를 전기·가스·위험물의 저장·취급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진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 확대를 포함한 소방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강습자와 전남지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표본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적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질적조사가 병행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과 지역 그리고 조사방법 등의 스펙트럼을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ae, Jin and Seong Cheon Woo. 2010.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Fire Safety in Multiplex Available Premises. *CEM-TP*. 6(3): 30-44.
- Choi, Byung Gab. 2009. Research on Prevention of Fire Against Cultural Heritage: Focus on Wooden Structure. Master Thesis. Kyunggi University.
- Ha, Yong Woo. 2006. A Study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Develop the Self-Inspection System for Fire Facilities: Focused on the Analysis of Fire Safety Director's Inspection Condition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 Ham, Seung Hee. 2009. A Study on the Point at Issues of the Present Laws and Ordinances System of the Fire Preventing Management and the Ways to Improve them.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 Han, Sang Pil and Mu Heon Jeong. 2013. A Study on Introduction of Fire Prevention Sub-Manager for Efficient Fire Safety Management.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7(3): 80-84.
- Je, Tae Hwan. 2004. Study on the Efficient Fire Services Management.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Jeong, Jae Sun. 2010.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Fire Safety Education for Raising Children's Safety Consciousness. Master Thesis. Hoseo University.
- Jin, Yeong Bae. 2013.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of Multi-use Establishment. Master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Joo, Nak Dong. 2009. A Study on Fire Safety Control System of Fire-fighting Object.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ang, Ho Jang. 2014. The Study the Effective Fire Safety Agency Management Method of the Multi-use Facility Building. Master Thesis. Kyungil University.
- Kim, Hyeong Gi. 2009. The Study On Qualification System Improvement For A Fire Protection Manager. Master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 Kim, Hyung doo. 2013. Improvement Plan for Effective Fire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Comparative Assessment of Fire Safety Factors in High-rise Buildings. Doctoral Thesis. Dongguk University.
- Kim, Seung ae. 2011.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for the Fire Safety Education: Focusing on the System of Fire Safety Educator. Master Thesis. Mokwon University.
- Kim, Sung Gyu. 2010. A Recognition Research of Firefighters about the Safety Supervision Education: Focused on the

Cities of Changwon, Masan, and Jinhae. Master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Kook, Hyeong Ho. 2006.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Fire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and its Countermeasures in Korea.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Kwak, Chang Sik. 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Building Fire Safety Grade System. Master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won, Mi Jin. 2013.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ire-fighting Safety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Focusing on the Apartment Houses with Less Than 15 Storie. Master Thesis. Kyungil University.

Lee, Mi Ja. 2010.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Way of The Fire Prevention Management: Focus on the Managing Ability of the Fire Prevention Manager.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Lee, Sang Moo.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Fire-safety Management for the Multi-owned Buildings. Master Thesis. Daegu University.

Lee, Sang Pal and Jae Hyun Bae. 2013. Study on th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afety Director System.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22(1): 63-90.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Fire Administration Data.

Park, Jae Sung. 2013.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ire Protection Control for Apartment. *Journal of KOSHAM*. 13(1): 297-301.

Shim, Jae Meoung. 2011.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Self-checking System of Fire Facilitie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Seoul.

Shin, Pyeong Woo. 2015. A Study on the Legal Review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Public Land Law Review*. 68: 317-336.

Sun, Byeung Ju. 2012.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Safety Management of Outdoor Hazardous Material Storage Tank.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Yoon, Bong Hwan. 2013. An Implement Plan Study on Fire Safety Supervision System for Increasing Self-discipline Capability. Master Thesis. Kyungil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호장. 2014.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위탁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창식. 2010. 방화관리등급분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정소방대상물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안전처. 2015. 2015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국민안전처.

국형호. 2006. 한국 방화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진. 2013.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성규. 2010.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창원·마산·진해시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애. 2011. 소방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기. 2009. 방화관리자의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두. 2013.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영향요소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재성. 2013.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1): 297-301.

선병주. 2012.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평우. 2015. 소방안전관리규정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68(0): 317-336.

심재명. 2011.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봉환. 2013. 자율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자. 2010. 방화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화관리자 업무능력 제고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무. 2008. 집합건물의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팔, 배재현. 2013.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

- 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2(1): 63-90.
- 정재선. 2010. 아동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태환. 2004. 방화관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낙동. 2009.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영배. 2013.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진, 우성천. 2010. 다중이용업소의 효과적인 소방안전 개선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6(3): 30-44.
- 최병갑. 2009. 문화재 소방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목조건축물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용우. 2006.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방화관리자의 점검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필, 정무현. 2013.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7(3): 80-84.
- 함승희. 2009. 방화관리의 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Feb. 3, 2016 / Revised: Mar. 25, 2016 / Accepted: Mar. 29, 2016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연구

– 전남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자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상주근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적인 법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되며, 지켜지지 않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주제어 : 소방안전관리제도, 제도적 환경, 소방안전관리자

Profiles **Sung Woon Hong** : The author got in public administrati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 has served as an instructor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as an adjunct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Police, Law and Public Administration at Gwangju University respectively since 2006. His main interests include fire administration, policy analysis, and conflict management. He has published 6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2 co-author books since 2009(atti93@naver.com).

Jung Min Park : He received his Ph.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7. He is a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at Dongshin University.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Fire Service Administration, local administration, and local pubic finance. He han published 18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4 books, including 2 co-author book(jmpark21@hanmail.net).

Jin Gyu Choi : He works for Naju Fire Station in Naju-si, jeonnam, Korea. He received his M.A.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15.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Management(jgplus21@korea.kr).